

2024년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 공고(상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장의 사고사망 감축을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 중 상시 신청·접수 품목에 대해 공고 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25일

고용노동부 장관 ·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산업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 및 기술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2. 신청자격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 사업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중 건설현장 제외, 건설업 본사는 신청 가능함)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첨부1]
 -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 단, 안전투자 혁신사업 보조금을 지급받은 설비는 제외
 -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안법 시행령 제71조 별표 21에 따른 2호~24호까지의 설비를 보유하거나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 단,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급받은 설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참여제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참여제한

<참여 제한 사유>

-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보조금 부당수급 등)에 따른 제한기간 중인 자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주(단, 영 제71조 별표 21에 따른 기계·기구·설비를 보유하거나 그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제외)
- ▶ '24년도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사업, 산재예방시설 용자금 지원사업, 안전투자혁신사업, 건강일터 조성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
-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금년도 2회 이상 결정 받은 사업장

4. 지원내용

- (지원한도) 사업장 당 최대 3천만원까지*

* 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80%, 부가세 미지원

- (지원품목) 스마트 안전장비 30종

- 품목별 세부설명, 지급 및 최소성능 기준은 세부내용참조[첨부2]

구 분	취급품목
안 전 (24종)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2종)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2종)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
	고소작업대 스마트 안전장치
	인공지능(AI) 스마트 크레인 충돌방지장치, 옵션: 흔들림 방지장치(2종)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4종)
	이동식 크레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화학사고예방 통합모니터링시스템(6종)
보 건 (6종)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2종)
	이륜차 운전자 착용형 충돌보호 에어백조끼
	스마트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장비
	근력보조슈트
	유해물질 통합안전관리시스템
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 보조장치	
스마트 안전보건 개인보호구 2종(방진마스크, 귀마개 등)	

※ [첨부2]최소성능기준 및 지급기준 미충족시 지원불가(반드시 해당 품목별 기준 확인)

○ **(지원절차)** 일선기관별 배정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신청·접수

※ 필요 시, 일선기관별 보조금 지급대상자 우선지원 선정기준 적용(첨부3 참조)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4. 1. 29.(월) ~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을 통한 상시 신청·접수

-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오프라인 신청불가)

☞ 온라인 신청 매뉴얼: clean.kosha.or.kr > 알림마당 > 서식모음 및 자료실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사업주 본인 이외 대리 신청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에서 대리 신청한 것이 확인될 시 서류 일체 반려 조치

○ **(제출서류)** 보조지원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참여사업장 이용 동의」 사항은 모두 체크하고 서명란에 반드시 **사업주명**으로 서명(사업장명 또는 담당자명 등의 서명은 반려 등 조치)

※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담당자)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

구 분	비고
①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② 상품설명서(카탈로그) 등 : 제품명, 외관사진, 사양, 규격, 기능, 도면 등 ※ 품목별 최소성능기준에서 제시하는 기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③ 품목별 「사업장 전경 및 지원품목 설치대상 작업 증빙사진(자금신청)	(첨부4)
④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⑤ 스마트 안전장비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첨부4)
⑥ 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투자계획용) ※ 제작·판매업체 서명은 견적서의 제작·판매업체와 일치	(첨부4)
⑦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등 -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차량계 건설기계·하역운반 기계 등 해당 시	해당시
⑧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유해요인조사 기본조사표 등 투자계획 확인*을 위한 자료 * 품목별 최소성능기준, 지급기준에서 제시한 자료 등	해당시 (첨부4)
⑨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해당시
⑩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 50인 이상인 경우	해당시
⑪ 추가지원 증빙자료(강소기업, 특별재난지역 등)	해당시

※ ④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발급」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사업주가 산재보상보험을 임의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생략

☞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 ⑨의 가격결정 근거자료는 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5건 이상)로써 제출대상*이거나 원가계산(검토)보고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제출[첨부2 확인]

6. 보조금 지급조건

○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투자완료 기간 내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설치 등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완료하고, 제출서류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가능

- (투자완료기간) 보조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투자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하며 사업주의 귀책이 없는 경우 추가연장 가능

- (확인요청)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설치 등 완료 후, 다음의 서류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여, 공단의 확인을 요청

구 분		비고
① 입금 신청통장 사본 각 1부		
②-1 실거래 입증서류: 거래내역 증빙		
오프라인 구매 시	온라인 구매 시	
(제품 구매) 계약서 사본 1부	구매내역(온라인 쇼핑몰 구매페이지 등) * 포함내용: 모델명,수량,금액,결제방법	
②-2 실거래 입증서류: 입금증빙서류		
③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 검토보고서		해당시
④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⑤ 지급보증보험증권		(첨부5)
⑥ 하자보증보험증권 사본(구매(제작·판매)업체별 소요금액 100만원 이상시 제출)		해당시(첨부6)
⑦ 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투자완료용) ※ 제작·판매업체 서명은 견적서의 제작·판매업체와 일치하여야 함.		(첨부4)
⑧ 품목별 안전인증, 안전검사 등 인증·검사 관련 서류 ※ 크레인 주요구조부 변경에 따라 안전인증 시 소요비용 증빙 서류 제출		해당시
⑨ 품목별 추가요구 서류(시 카메라 설치 서약서, 보호구 지급대장 등)		해당시(첨부4)
⑩ 보조금지급 예정사업장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첨부4)
⑪ 품목별 「스마트 안전장비 시설개선 완료 증빙사진」		(첨부4)

※ ④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발급」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사업주가 산재보상보험을 임의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특수 형태 근로자만 고용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생략

☞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 ⑥ 「하자보증보험증권」은 제작·판매업체가 보조금 지급사업장에 제공하고, 보조금 지급사업장은 공단에 사본을 제출

<입금 증빙서류>

(오프라인 구매시)

① (무통장입금) 이체확인증* + 전자세금계산서 + 사업장 및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통장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지급금액 등 포함

(온라인 구매시) ①번 또는 ②번 서류 제출

① (무통장입금) 이체확인증 + 판매업체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사업장용 현금영수증(국세청 홈텍스))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지급금액 등 포함

② (카드결제) 신용카드매출전표 + 신용카드복사본*

· (사용가능카드) 법인카드(법인) 또는 국세청 등록된 사업용신용카드(개인사업자)

· (신용카드복사본) 법인명 또는 대표자명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카드번호는 일부 숨김

· (신용카드매출전표) 공급자와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의 정보가 일치하여야 함

7. 선금급 (신청 시)

- 사업주의 초기 비용부담을 감소시키고, 신속한 해당 사업의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선금 지원 운영
-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선금급 신청양식과 지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한 경우, 보조결정금액의 70%이내에서 선금급 가능

8.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투자기업은 보조지원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제재부가금(최대 5배) 및 참여배제 조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 (거짓·부정) 보조금 및 5배 추가 환수, 5년 제한, (임의매각·훼손·분실) 보조금 및 2배 추가 환수, 3년 제한, (목적외사용·국외이전) 보조금 및 2배 추가 환수, 3년 제한

9. 취소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 지급 사업장은 보조금 지급이 취소되고 지원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환수)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2항에 따른 지원 취소 사유>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 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 ▶ 지원 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 ▶ 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 ▶ 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 그 밖에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처리 규칙」 제14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10. 기타사항

- 문의처: 대표번호(1544-3088) 또는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 참고
 - ☞ 클린사업 조성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알림마당>지역별 문의처 참고
- (사후관리) 지원 품목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공단에서 확인
 - 투자완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투자기업을 방문하여 사후기술지도 실시
 - 사후관리기간(3년)동안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 (품질보증) 사후관리기간 동안 A/S가 유지토록 지원품목은 품질보증기간*(3년) 의무가 확보되어야 함
 - * 1년 무상, 2년 유상(제품의 본질적 문제는 제작·판매업체 부담 조건)
- (명판부착) 기본적인 제반정보*를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기재하여 부착
 - * 필수정보: 제품명(모델명포함), 일련번호, 제조년월, 제작업체명, 판매업체명(연락처)
 - ※ 스티커, 종이 및 그 밖에 쉽게 파손·변형·지워지는 재질(방법)로의 부착은 불가하며,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부착
 - ☞ 일부 소형이거나 소액 제품(스마트 귀마개 등)의 경우, 효용성 및 편의성,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제외

■ 개요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한 사업주에 한해, 50인 이상 사업장을 지원대상으로 하고자 함

Q.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은 ①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과 ② 비영리 사회적기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은 업종별 매출액에 따른 규모기준과 5천억 미만의 상한기준을 모두 갖추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등 일정한 독립성기준을 갖춰야 중소기업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는 규모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갖춰야 중소기업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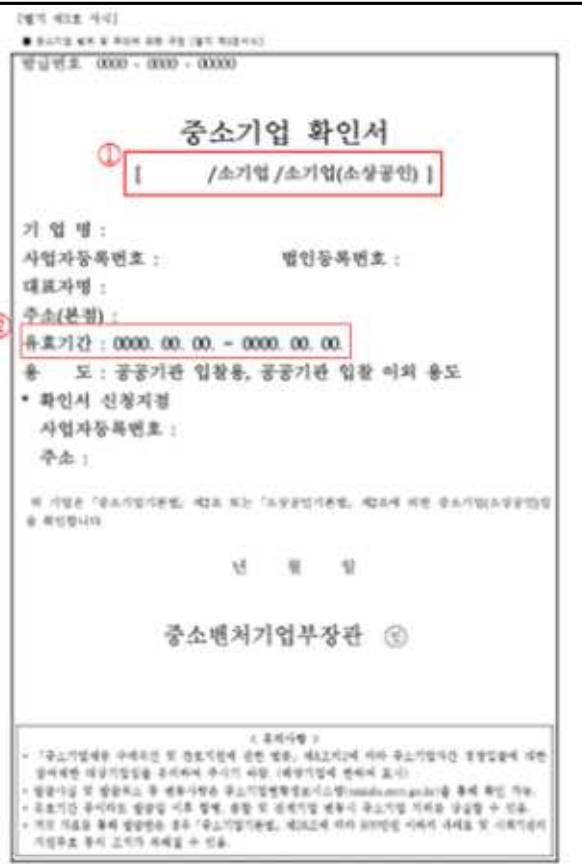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접속하여 발급 신청(오프라인의 경우 홈페이지 참조)

- 문의

- 일반상담(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온라인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 02-3215-2674



■ 확인사항중

① 신청사업장이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에 한하여 지원(중기업 지원불가)

② 유효기간 : 유효기간 내 신청 사업장인 경우 지원가능

※ 유효기간 산정기준 : 1년(+3개월)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한 날부터 1년
- 다만, 직전(또는 당해) 사업연도에 창업한 기업 등은 유효기간 달리 적용

1-1.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고정식)



- (지원목적) 위험구역 내 접근 시 실시간 감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끼임·충돌 및 그 밖에 위험상황(화재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인공지능(AI)모델 기반으로 카메라 또는 센서(Lidar 등)를 통해 위험영역·행동, 사고발생 등을 인지하여 경보 또는 조치를 수행하는 시스템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 (고정식)	1. (신청 시) 생산설비, 위험기계기구 사용 공간, 작업자가 상시 이동, 작업하는 구역에 설치 2. 일반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 투자완료 확인 요청 전까지 「인공지능(AI)관련 카메라 설치에 대한 서약서」 제출 3. 투자완료확인(요청)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검토)보고서를 제출 받아 기준가격 산정
AI 화재감지기 (옵션)	1. (신청 시) 인공지능기반 인체감지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장 중 극초기에 화재·폭발예방 기능을 희망하는 사업장 - 다만, 인공지능기반 인체감지시스템 기능 옵션에 화재 또는 폭발인지 기능이 없을 것(중복 기능 지양) ※ 인공지능기반 인체감지시스템 설치 없이 단독설치 불가 (단독설치는 “화학사고예방 통합모니터링시스템”으로 지원) 2. 디바이스와 무선통신이 연결된 스마트폰 등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될 것. 3.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

구성	최소 성능기준
카메라 또는 센서 (그 외 감지기능장치 등)	1.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통합제어장치 (AI영상처리장치, 컴퓨터 또는 그 역할을 하는 장비 및 그 밖에 장치 등)	■ 해당 구성(통합제어장치)은 각 장치 등이 종합하여 아래 최소성능기준을 충족 - 1. '끼임부딪힘과 추가 옵션선택 사*'에 대해 신속히 인지하고 스스로 경보 및 조치 * 쓰러짐 화재 감지 등 - 2. 분진, 온도, 습도 등 작업장 환경으로부터 적정 성능을 유지하도록 케이스제작, 사무실 설치 - 3. 인공지능(AI) 기능 활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 제출 ※ 한국인정기구(KOLAS) 또는 국제인정협력체(ILAC, APLAC)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시험 또는 검사 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제출
감지영역설정	- 카메라 또는 센서(라이더, 그 외 감지기능장치 등)가 감지하는 위험구역 변경 가능
경보장치	-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 위험, 경고를 가시적으로 확인가능, 부저(경보음) 필수

- (옵션) AI 극초기 화재·폭발 예방장치

구 성	최소 성능기준
<p>디바이스 (감지기, 콘트롤 박스 또는 그밖에 부속품)</p>	<p>■ 해당 구성이 각 장치 등이 종합하여 아래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소 2개 이상의 다음과 같은 모드 및 기능을 보유하여야 하며, 15초 이내로 불꽃을 감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과 불꽃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경보 또는 조치가 되지 않고, 불꽃이 단독으로 발생·존재하는 경우에 경보 또는 조치 - 사람의 존재 상관없이 불꽃이 발생·존재하면 경보 또는 조치 2. 무선으로 스마트폰 등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기능과 비상상황 발생 시 스마트폰과 디바이스에서 경보음이 울릴 것(디바이스 경보음 단독 전원차단 불가) 3. 작동의 이상 및 부품 교체 등을 상시 진단하는 자가 기능이 있어야하며, 사용자가 바로 인지 가능 (연결된 스마트 폰 등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가능) 4. 전파 KC인증 및 소방 KFI인증(옥내외형, 방수형 등)을 모두 받은 제품일 것 5. 방수방진등급 : IP65 이상 6. 인공지능(AI) 기능·활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정기구(KOLAS) 또는 국제인정협력체(ILAC, APLAC)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시험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제출

1-2.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이동식)



- (지원목적) 위험구역 내 접근 시 실시간 감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끼임·충돌 및 그 밖에 위험상황(화재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인공지능(AI)기반 모델 및 이동통신기술이 적용된 카메라를 통해 근로자가 상시 이동하는 작업(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행동·상황 등을 인지하여 모니터링 및 경보를 해주는 장비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 (이동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업 본사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본사는 건설업 등록증 사본, 및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도급·하도급 계약서 사본을 제출 2. 일반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 투자완료 확인 요청 전까지 「인공지능(AI)관련 카메라 설치에 대한 서약서」 제출 3. 투자완료확인(요청)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검토) 보고서를 제출받아 기준가격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실거래 세금계산서 제출 시 실거래금액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 가능(5건 이상, 최저가격)
구 성	최소 성능기준
통합제어장치 (AI영상처리장치, 컴퓨터 또는 그 역할을 하는 장비 및 모니터, 그 밖에 장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구성(통합제어장치)은 각 장치 등이 종합하여 아래 최소성능기준을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유무·추락과 옵션(선택시)*에 대해 신속히 인지하고 스스로 경보 및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러짐, 화재 감지 등 - 2. 분진, 온도, 습도 등 작업장 환경으로부터 적정 성능을 유지하도록 케이스제작, 사무실 설치 - 3. 모니터 등으로 실시간 상황을 화면을 통해 모니터링 할 수 있을 것 - 4. 인공지능(AI) 기능·활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정기구(KOLAS) 또는 국제인정협력체(ILAC, APLAC)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시험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제출
카메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류 : 열화상카메라 또는 일반카메라 2. IP55이상 3. 카메라는 무선통신을 통해 AI영상처리장치(컴퓨터 또는 그 역할을 하는 장비)와 상호 연결될 것. 4. 전파인증(KC)을 받은 제품 5. 배터리는 1회 충전 시 48시간 이상 작동하고, 별도의 충전 기구를 통해 외부충전 가능
경보장치	○ 작업장 소음에서도 위험 경고 등을 시각·청각적으로 바로 인지
기타	○ 스마트폰 등을 통해 모니터링 기능과 비상 상황시 알림 기능이 있을 것.

2-1.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ILO형)



- (지원목적) 작업 중 끼임·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을 설치하여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고위험 기계설비에 센서와 제어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접근 및 행동에 따라 설비의 전원차단 및 정지하는 시스템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 (ILO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 시) 고위험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설비 자체 구매비용 미지원)신규 설치인 경우, 해당 고위험 기계설비 구매 계약서 사본 제출 - I-L-O 구성 모두 설치되지 않은 설비에 한해 원칙적으로 지원하되, 안전입력기기(I)만 기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지원 가능 2. 고위험 기계설비가 안전인증·검사대상인 경우, 기 검사합격증을 제출하거나 투자완료 전까지 안전인증·검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지원 3. 투자완료확인(요청)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기준가격 산정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 성	최소 성능기준
비상정지장치, 도어잠금장치, 안전제어기기, safety릴레이, 그 밖에 옵션·부속장치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래와 같이 입력처리 출력기능(I-L-O)을 갖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입력기기(I) : 비상정지 및 도어잠금장치(락, 스위치 등) 설치 - 안전제어기기(L) : 안전컨트롤러 또는 안전PLC 등 설치 - 안전출력기기(O) : safety릴레이 등 설치 2.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의 구성품이 안전인증·검사대상인 경우, 설치기준은 안전인증·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서 제출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223조에 따른 방호울이 설치되거나 밀폐형 구조일 것 4. 설치된 설비에 접근하면 설비가 설정 단계에 따라 감지 및 정지 5. 고위험 기계설비 안전에 관한 기능 추가(옵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이트 커튼, 레이저스캐너, 방호울, 안전매트 등 ※ KCS인증 대상은 반드시 해당 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
경보장치	○ 위험, 경고를 가시적으로 확인가능, 부저(경보음) 필수

2-2.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인공지능형)



- (지원목적) 작업 중 끼임·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을 설치하여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고위험 기계설비에 센서 및 인공지능(AI)와 제어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접근 및 행동에 따라 설비의 전원차단 및 정지하는 시스템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 (인공지능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 시) 고위험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설치인 경우, 해당 고위험 기계설비 구매 계약서 사본 제출(기계설비 자체 구매비용 미지원) ※ 비상정지 및 도어잠금장치(락, 스위치 등) 등 기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2.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223조에 따른 방호울이 설치되거나 밀폐형 구조일 것 3. 고위험 기계설비가 안전인증·검사대상인 경우, 既검사합격증을 제출하거나 투자완료 전까지 안전인증·검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지원 4. 투자완료확인(요청)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기준가격 산정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성	최소 성능기준
카메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류 : 열화상카메라 또는 일반카메라 2.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통합제어장치 (AI영상처리장치, 컴퓨터 또는 그 역할을 하는 장비 및 그 밖에 장치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끼임·부딪힘과 추가 옵션(선택시)*에 대해 신속히 인지하고 스스로 경보 및 조치 * 쓰러짐, 화재 감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어 또는 방호덮개 등이 닫혀 있어 기계가 정상 가동하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끼임·부딪힘 등의 위험구역에 들어오는 경우, 고위험 기계설비가 즉시 정지 2. 분진유입, 온도, 습도 등 작업장 환경으로부터 적정 성능을 유지하도록 케이스 제작 또는 사무실 설치 3. 인공지능(AI) 기능·활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정기구(KOLAS) 또는 국제인정협력체(ILAC, APLAC)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시험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제출 4.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 구성품이 안전인증·검사대상인 경우, 설치 기준은 안전인증·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서 제출 5. 고위험 기계설비 안전에 관한 기능 추가(옵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이트 커튼, 레이저스캐너, 방호울, 안전매트 등 ※ KCs인증 대상은 반드시 해당 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
감지영역설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카메라가 감지하는 위험구역 변경 가능
경보장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험, 경고를 가시적으로 확인가능, 부저(경보음) 필수

3.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



- (지원목적) 기계설비 등에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 를 설치하여 끼임·부딪힘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이동형 위험설비에 센서와 제어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 등 충돌위험시 서행·정지하는 시스템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	1. (신청 시) 무인운반차 등 이동형 위험설비를 보유(또는 신규 구매) 및 사용하는 사업장 2. 고위험 기계설비가 안전인증·검사대상인 경우, 既검사합격증을 제출하거나 투자완료 전까지 안전 인증·검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지원 3. 투자완료확인(요청)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기준가격 산정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 성	최소 성능기준
비상정지장치, 레이저스캐너, 안전제어기기, safety릴레이, 그 밖에 장치 등	1. 아래와 같이 입력처리 출력기능(I-L-O)을 갖출 것 - 안전입력기기(I) : 레이저 스캐너 및 비상정지장치 등 설치 - 안전제어기기(L) : 안전컨트롤러 또는 안전PLC 등 설치 - 안전출력기기(O) : safety릴레이 등 설치 2.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의 구성품 등이 안전인증·검사대상인 경우, 설치기준은 안전인증·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서 제출 3. 근로자가 위험 영역에 접근 시 단계에 따라 정지해야함
경고장치	1. 위험, 경고를 가시적으로 확인가능, 부저(경보음) 필수

※ 입력처리 출력기능(I-L-O) 지원판단기준 : I-L-O 구성 모두 설치되지 않은 설비에 한해 원칙적으로 지원 하되, 안전입력기기(I)만 기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지원 가능

4. 고소작업대 스마트 안전장치(비접촉 과상승방지장치)



- (지원목적) 고소작업대에 “비접촉식 과상승방지장치” 를 설치하여 끼임·부딪힘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고소작업대와 천장 사이에 거리(높이)를 센서로 측정하여 위험 높이인 경우, 자동정지하는 장치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고소작업대 스마트 안전장치	1. (신청 시) 고소작업대(안전인증품)를 보유(신규구매포함) 및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장 2.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 성	최소 성능기준
비접촉 과상승방지장치	1. KC인증(전파인증) 제품일 것 2. 감지방식: 비접촉식(전파, 레이저 이상의 성능) 3. 비접촉 과상승방지장치를 고소작업대 개당 최소 4개 이상을 탈착이 불가하도록 고정하여 설치할 것 4. 방수방진등급: IP55 이상 5. 상부 구조물과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상부 사이 간격 최소 0.6m에서 정지할 것.

5. 인공지능(AI) 스마트 크레인 충돌방지장치(옵션 : 흔들림 방지장치)



- (지원목적) 크레인에 “인공지능(AI) 스마트 크레인 충돌방지장치 및 흔들림 방지장치” 를 설치하여 끼임부딪힘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크레인에 인공지능(AI)기반 모델과 카메라를 설치하여 근로자가 위험구역에 근접하는 경우, 차례로 경보 및 정지하는 시스템
 - 옵션 : 크레인이 물건을 인양·이동시 발생하는 흔들림을 제거하여 물건의 떨어짐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인공지능(AI) 크레인 충돌방지장치	1. (신청 시) 크레인을 보유(신규설치포함) 및 사용하는 사업장 2. 투자완료 확인 요청 전 주요 구조부 변경에 따른 안전인증을 다시 받고 적합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 안전인증을 다시 받은 경우, 제품심사 비용 및 부대비용(설계도면 작성, 하중시험 등) 일부 지원 가능 ※ 단, 안전인증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 3. 일반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 투자완료 확인 요청 전까지 「인공지능(AI)관련 카메라 설치에 대한 서약서」 제출 4. 투자완료확인(요청)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기준가격 산정
흔들림 방지장치 (옵션)	1. 크레인을 보유(신규설치포함) 및 사용하는 사업장 2. 출발·정지, 이동·정지 직후 흔들림이 거의 없어야 할 것. 3. 투자완료 확인 요청 전 주요 구조부 변경에 따른 안전인증을 다시 받고 적합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4. 투자완료확인(요청)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기준가격 산정 5. 사후기술지도 대상 품목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 성	최소 성능기준
카메라	1. 종류 : 일반카메라(열화상 카메라 설치 가능) 2.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통합제어장치 (AI영상분석서버, 무선통신기, 컴퓨터 및 그 밖에 부속장치 등)	■ 해당 구성(통합제어장치)이 각 장치 등이 종합하여 아래 최소성능기준을 충족 1. 인공지능(AI) 기능·활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 제출 ※ 한국인정기구(KOLAS) 또는 국제인정협력체(ILAC, APLAC)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시험 또는 검사 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에서 AI알고리즘 사용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를 제출 2. KC인증(전파인증) 3. 시스템 탑재하여 모니터링 화면이 끊기지 않고, 성능을 안정적으로 적정하게 유지 4. 분진유입, 온도, 습도 등 작업장 환경으로부터 적정 성능을 유지하도록 케이스 제작, 사무실 설치 등 조치 5. 설치·운전환경에 따라 구역 및 단계별 작업자를 감지하고, 경보·정지 기능을 탑재할 것. - 설치 후, 화물 권상·권하 시 매달린 화물 밑에 작업자가 있는 경우, 권상·권하동작 정지
고보라이트 (바닥조명)	○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경보장치	○ 위험, 경고를 가시적으로 확인가능 및 부저(경보음) 필수 ○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흔들림 방지장치 (옵션)	○ 출발·정지시 발생하는 관성 및 이동·정지 위치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한 진동(흔들림)을 제거 ○ 옥외 설치시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6.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



- (지원목적)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끼임·부딪힘·깔림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무선, ICT, 센서 등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 안전장치로서 다음을 말함
 - 전도예방장치 : 하역운반기계가 중량물 운반시 무게와 중심을 감지하여 전도 등을 예방하는 장치
 - 충돌방지장치 : 카메라·센서를 통해 하역운반차량이 주변 근로자와 충돌 위험을 경보장치로 알려 예방하는 장치
 - 자동·서행 및 방지장치 : 무선장치 및 작업자가 착용한 태그(tag) 등을 통해 전동지게차 및 근로자가 접근하여 충돌위험이 있을 경우, 거리별로 서행 및 정지하는 장치
 - 부착형 충돌방지장치 : 중장비에 자석 등으로 모니터, 카메라, 경보기 등을 부착하여 사람을 인식하여 접근 시 경보발생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	1. (신청 시)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를 보유 및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장 ※ 단, 자동 서행 및 정지장치 설치는 전동지게차만 가능 ※ 충돌방지장치(일반센서형)은 전도예방장치의 옵션으로 지원가능 2. (신청 시) 안전장치를 부착하려는 지게차는 취득 및 등록에 따른 지자체 신고를 필한 설비에 한함. 3.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 단, 자동 서행 및 정지장치, 충돌방지장치(카메라센서형)는 투자완료확인(요청)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기준가격 산정

○ (성능기준) 구분별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 ① 전도방지장치(옵션: 충돌방지장치 일반센서형)

구성	최소 성능기준
로드센서	1. 로드센서는 정격하중에 85% 이상 및 기울기가 위험 수준 시 경보가 작동할 것 2. 방수방진등급: IP55이상
필수구성품 (모니터 경보장치 무선통신기)	■ 해당 구성(필수구성품)은 각 장치 등이 종합하여 아래 최소성능기준을 충족 1. 모니터에는 지게차 정격하중, 화물운반무게, 안정도(기울기) 등을 표시 ※ (옵션) 충돌방지장치 일반센서형 선택 시, 충돌방지 현황(위험 정보 등) 표시 2. 무선통신을 통해 기기(로드센서, 모니터, 무선통신기, 충돌감지장치(옵션) 등) 간 연결될 것. (유선 연결은 지원 불가) 3. 경보장치는 작동 시 작업자가 인지할 수 있는 음량과 밝기를 갖출 것(작업 시, 정상작동을 유지할 것)
충돌방지장치 (일반센서형)	■ 후방충돌 감지장치는 아래 최소성능기준을 충족 1. 감지장치는 최소 1m이상 거리에서 근접하는 사람 또는 물체를 감지 2.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 필수 구성품(모니터, 경보장치, 무선통신기) 등 충돌방지장치(일반센서형)과 통합하여 설치 가능

- ② 충돌방지장치(카메라 센서형)

구분	구성	최소 성능기준
카메라 센서형	필수구성품 (모니터, 경보장치, 무선통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구성(필수구성품)은 각 장치 등이 종합하여 아래 최소성능기준을 충족 - 1. 운전자 모니터에는 충돌방지 현황(실시간 영상, 인체충돌 및 기타 위험 정보 등) 표시되고, 충돌위험 시 경보가 울릴 것 - 2. 무선통신을 통해 기기(모니터, 카메라, 감지장치, 무선통신기, 그 밖의 기타 장치 등) 간 연결될 것. 3. 방수방진등급 IP55 이상일 것 4. 단, 지게차에 설치하는 경우, 별도의 모니터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제3자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체충돌 등 위험상황 발생 또는 발생우려 시 경보음 및 알림(충돌방향·위치 표시)을 알 수 있을 것 - 지게차와의 무선통신 반경은 최소 10m 이상일 것.
	카메라 및 감지장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카메라 및 감지장치는 최소 4대 이상 설치 2.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3. 감지장치로부터 최소 1m 거리의 사람 또는 물체를 감지

※ 필수 구성품(모니터, 경보장치, 무선통신기) 등 타 장비(전도예방장치 등)와 통합하여 설치 가능

- ③ 자동 서행 및 정지장치

구성	최소 성능기준
필수구성품 (무선통신기, 제어장치, 경보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구성(필수구성품)은 각 장치 등이 종합하여 아래 최소성능기준을 충족 1. 무선통신기(지게차등)는 작업자태그와 통신기 간 서로 접근시 거리별로 서행 및 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서로 통신기(지게차 등)끼리 근접하여 멈췄을 경우, 충돌범위 외로 벗어날 수 있는 임시 해제기능이 있어야 함 2. 경보장치는 작동 시 작업자가 인지할 수 있는 음량과 밝기를 갖출 것(작업 시, 정상작동을 유지할 것) 3. 방수방진등급: IP55 이상 (외부 노출장비만 적용)
작업자 태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수방진등급: IP55 이상 (외부 노출장비만 적용) 2. 작업자태그는 최소 24시간 이상 작동되고, 작업자가 임의로 off할 수 없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자가 불편이 없는 정도의 소형·경량일 것

- ④ 부착형 충돌방지장치

구성	최소 성능기준
카메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카메라 및 감지장치는 최소 4대 이상 설치 2.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3. 감지장치로부터 최소 1m 거리의 사람 또는 물체를 감지
필수구성품 (모니터, 경보장치, 무선통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구성(필수구성품)은 각 장치 등이 종합하여 아래 최소성능기준을 충족 1. 운전자 모니터에는 충돌방지 현황(실시간 영상, 인체충돌 및 기타 위험 정보 등) 표시되고, 충돌 위험 시 경보가 울릴 것 2. 무선통신을 통해 기기(모니터, 카메라, 감지장치, 무선통신기, 그 밖의 기타 장치 등) 간 연결될 것. 3. 경보장치는 작업자가 바로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의 음량과 밝기를 갖출 것
부착설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석 등 그 밖에 방법으로 설비에 탈부착이 가능할 것. 2. 부착 후 쉽게 떨어지지 않는 구조일 것.

7. 이동식 크레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 (지원목적) 이동식 크레인에 “이동식 크레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를 설치하여 전도·떨어짐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이동식 크레인에 센서 및 전도방지장치 등을 설치하여 전도를 예방하고, 무선통신을 통해 전도의 상태 및 위험 등을 스마트 폰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이동식 크레인 통합전도방지 시스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 시) 이동식 크레인을 보유 및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장 2. 이동식 크레인 방호장치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3호[안전검사 고시] 별표2[크레인 검사기준]를 따름. 3. 투자완료확인 요청 전 안전검사를 받고 합격통지서를 받은 경우에 한함. 4. 투자완료확인(요청)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검토)보고서를 제출 받아 기준가격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제조사에서 실거래 세금계산서 제출 시 실거래금액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 가능(5건 이상, 최저가격) 5. 사후기술지도 대상품목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성	최소 성능기준
이동식 크레인 안전장치 일체형 (컨트롤러, 모니터, 붐길이센서, 붐각도센서,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스위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무선통신으로 별도 모니터링(스마트폰 등)이 가능하고, 위험상황을 시각 및 청각으로 알려줄 수 있을 것 2. 모니터에는 하중, 작업반경, 붐높이, 위험상황 등이 표시될 것 3. 붐길이센서 : 길이검출용 또는 신호전달용 4. 컨트롤러: MICOM 사용 또는 동등 이상의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신뢰성 확보 5. 로드센서: 스트레인 게이지 또는 로드셀 6. 과부하방지장치 : 안전인증품(KCs) 사용

8.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 (지원목적)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을 설치하여 **갈림·끼임·전도**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 센서 및 전도방지장치 등을 설치하여 전도를 예방하고, 무선 통신을 통해 전도의 상태 및 위험 등을 스마트 폰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통합전도방지 시스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 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를 보유 및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장 2.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방호장치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3호 [안전검사 고시] 별표 12[고소작업대 검사기준]를 따를 것. 3. 투자완료확인 요청 전 안전검사를 받고 합격통지서를 받은 경우에 한함. 4. 투자완료확인(요청)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검토) 보고서를 제출 받아 기준가격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제조사에서 실거래 세금계산서 제출 시 실거래금액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 가능(5건 이상, 최저가격) 5. 사후기술지도 대상 품목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성	최소 성능기준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안전장치 일체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무선통신으로 별도 모니터링(스마트폰 등)이 가능하고, 위험상황을 시각 및 청각으로 알려줄 수 있을 것 2. 모니터에는 하중, 작업반경, 붐높이, 위험상황 등이 표시될 것 3. 붐길이센서 : 길이검출용 또는 신호전달용 4. 컨트롤러: MICOM 사용 또는 동등 이상의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신뢰성 확보 5. 로드센서: 스트레인 게이지 또는 로드셀 6. 과부하방지장치 : 안전인증품(KCs) 사용

- * 컨트롤러, 모니터, 붐길이센서, 붐각도센서, 아웃트리거상태감지컨트롤러, 아웃트리거인출감지센서, 잭착지감지센서, 선회센서, 하중컨버터, 과부하방지장치

9.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 (지원목적)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에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를 설치하여 전도떨어짐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에 센서 및 전도방지장치 등을 설치하여 전도를 예방하고, 무선통신을 통해 전도의 상태 및 위험 등을 스마트 폰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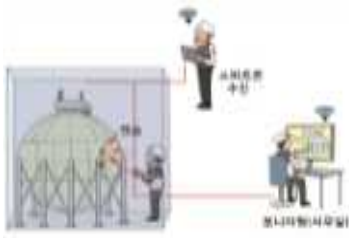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 시)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보유 및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장 2.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방호장치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43호[안전검사 고시] 별표3[리프트 검사기준]을 따름 3. 투자완료확인 요청 전 안전검사를 받고 합격통지서를 받은 경우에 한함. 4. 투자완료확인(요청)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검토) 보고서를 제출받아 기준가격 산정 ※ 단, 제조사에서 실거래 세금계산서 제출 시 실거래금액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 가능(5건 이상, 최저가격) 5. 사후기술지도 대상 품목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성	최소 성능기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안전장치 일체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무선통신으로 별도 모니터링(스마트폰 등)이 가능하고, 위험상황을 시각 및 청각으로 알려줄 수 있을 것 2. 모니터에는 하중, 작업반경, 붐높이, 위험상황 등이 표시될 것 3. 붐길이센서 : 길이검출용 또는 신호전달용 4. 컨트롤러: MICOM 사용 또는 동등 이상의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신뢰성 확보 5. 로드센서: 스트레인 게이지 또는 로드셀 6. 과부하방지장치 : 안전인증품(KCs) 사용

- * 붐-아웃트리거연동장치, 아웃트리거 잭하중감지장치,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붐과인출방지장치

10-1. 화학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고정식)



- (지원목적) 화재폭발 위험장소에 IoT 기반의 “화학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여 화재, 폭발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인화성가스·액체를 취급하는 장소에 감지기, 수신반 등을 설치하여, 가스누출상황을 무선통신으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모니터링·경보 할 수 있는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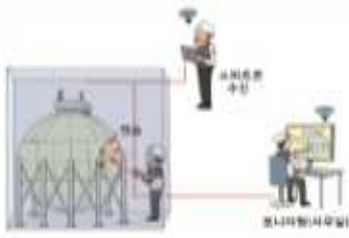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화학사고예방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고정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 시) 화재·폭발 위험장소 또는 위험공정을 보유한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안기준에관한규칙 제243조(소화설비) 설치조건에 해당하는 장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18조 [별표18] 밀폐공간에 해당되는 경우, 질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센서를 추가(옵션)할 수 있음 2. 폭발위험장소 내 설치·사용되는 방폭구조전기기구 등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9호[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안전인증품(KCs) 사용 및 관련 서류(인증서 등) 제출 3. 투자완료확인(요청)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검토) 보고서를 제출받아 기준가격 산정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 분	최소 성능기준
수신반 (모니터링 설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면에서 가스감지기 위치 및 감지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할 것 2. 스마트폰 등을 통한 동시 모니터링 기능과 비상상황 발생 시 현장 근로자의 스마트폰 등으로 경보 3. 확장 유닛(다채널)을 사용하여 추가되는 기능 및 수치 등이 화면에 표시될 것 4. 긴급차단장치 및 HMI시스템 등 가스 확산 방지, 시스템 통제 기능을 위한 구성품 추가(옵션) 가능 5. 방수방진등급: IP65 이상 6. 향후 시스템 설치 완료 후, 시공 업체에서 반드시 성능시험을 실시할 것(결과서 확인)
가스감지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전원이 차단되어도 30분 이상 연속적으로 가스의 감지와 경보기능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감지기는 항시 가동)
경보장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험, 경고를 가시적으로 확인가능 및 부저(경보음) 필수 2. 방수방진등급 : IP65 이상 ※ 수신반내 탑재가능

※ 각 구성품(전기기구 및 부속품 등)을 폭발위험장소 내 설치 시 한국산업표준(KS) 등 기준에 따른 적합한 방폭전기기구 선정 및 사용(안전인증품(KCs)) 및 방폭구조)

10-2. 화학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이동식)



- (지원목적) 화재폭발 위험장소에 IoT 기반의 “화학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여 화재, 폭발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인화성가스·액체를 취급하는 장소에 이동이 가능한 감지기, 수신반 등을 통해, 가스누출상황을 무선통신으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모니터링·경보 할 수 있는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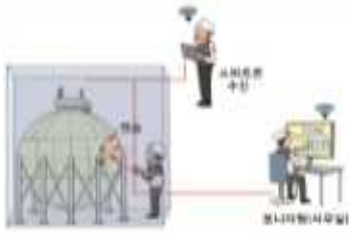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화학사고예방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이동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 시)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 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 등록증* 보유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수행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전문건설업(①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②기계설비·가스공사업, ③가스·난방공사업, ④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증 - 인화성가스·액체* 등 취급·저장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 (단, 사업장 내에서 정비·보수 목적으로 사용에 한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 [별표1] 위험물질의 종류 제5항 인화성가스, 제6항 인화성액체 ※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인화성 액체 등 물질은 지원 불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18조 [별표18] 밀폐공간에 해당되는 경우, 질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센서를 추가(옵션)할 수 있음 2. 폭발위험장소 내 설치·사용되는 방폭구조전기기구 등 안전인증품(KCs)은 인증서 등 관련서류 제출 3. 투자완료확인(요청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검토) 보고서를 제출받아 기준가격 산정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 분	최소 성능기준
수신반 (모니터링 설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면에서 가스감지기 위치 및 감지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할 것 2. 스마트폰 등을 통한 동시 모니터링 기능과 비상상황 발생 시 현장 근로자의 스마트폰 등으로 경보 3. 확장 유닛(다채널)을 사용하여 추가되는 기능 및 수치 등이 화면에 표시될 것 4. 방수방진등급: IP65 이상 5. 폭발위험장소 내 설치·사용되는 방폭구조전기기구 등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9호[안전인증·자율 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안전인증품(KCs)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 등록증 보유 업체의 경우 설치·사용 조건에 관계없이 구성품 일체 방폭인증(KCs)을 받은 제품만 지원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 - 인화성가스·액체 등 취급·저장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경우 신청 사업장 내 화재폭발위험이 상존하는 위험장소(공정)가 없으며, 해당 장소에서만 사용함을 사업주가 확인한 경우에만 비방폭형 지원 가능 ※ 성능확인서약서에 해당 내용을 포함한 준수사항 기재
경보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 경고를 가시적으로 확인가능 및 부저(경보음) 필수 ○ 방수방진등급 : IP65 이상 ※ 수신반내 탑재가능

※ 각 구성품(전기기구 및 부속품 등)을 폭발위험장소 내 설치 시 한국산업표준(KS) 등 기준에 따른 적합한 방폭전기기구 선정 및 사용(안전인증품(KCs)) 및 방폭구조)

10-3. 화학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AI화재감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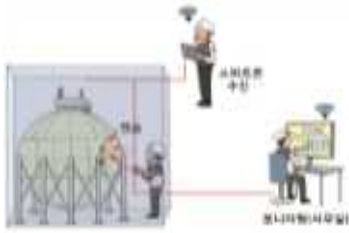
- (지원목적) 화재폭발 위험장소에 IoT, AI 기반의 “화학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여 극초기에 화재, 폭발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인공지능(AI), IoT 또는 그 밖의 신기술을 활용하여 불꽃 등을 초기에 인지·반응하여 화재·폭발재해를 예방하는 장비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인화성가스 통합 모니터링시스템 (AI화재감지기)	1. (신청 시) 화재·폭발 위험장소 또는 공정을 보유한 사업장(건설업은 본사를 통해 지원가능) 2. 디바이스와 무선통신이 연결된 스마트폰 등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되어야 함 3.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 성	최소 성능기준
디바이스 (감지기, 콘트롤박스 또는 그밖에 부속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구성이 각 장치 등이 종합하여 아래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 1. 최소 2개 이상의 다음과 같은 모드 및 기능을 보유하여야 하며, 15초 이내로 불꽃을 감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과 불꽃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경보 또는 조치가 되지 않고, 불꽃이 단독으로 발생·존재하는 경우에 경보 또는 조치 - 사람의 존재 상관없이 불꽃이 발생·존재하면 경보 또는 조치 2. 무선으로 스마트폰 등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기능과 비상상황 발생 시 스마트폰과 디바이스에서 경보음이 울릴 것(디바이스 경보음 단독 전원차단 불가) 3. 작동의 이상 및 부품 교체 등을 상시 진단하는 자가 기능이 있어야하며, 사용자가 바로 인지 가능 (연결된 스마트 폰 등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가능) 4. 전파 KC인증 및 소방 KFI인증(옥내외형, 방수형 등)을 모두 받은 제품일 것 5. 방수방진등급 : IP65 이상 6. 인공지능(AI) 기능·활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정기구(KOLAS) 또는 국제인정협력체(ILAC, APLAC)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시험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제출

10-4. 화학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AI계측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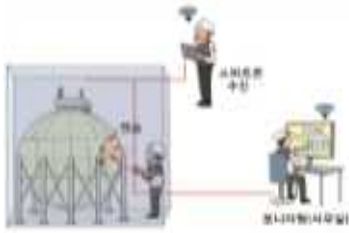
- (지원목적) 화재폭발 위험장소에 IoT, AI 기반의 “화학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여 화재, 폭발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AI카메라를 통해 아날로그(바늘, 막대, 숫자형 등) 계측기의 측정값을 변환하여 서버 및 관리자에게 전송하는 장치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AI 계측장치	1. (신청 시) 계측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기계·기구 등 화학설비(배관 등 포함)* 및 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7.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 참조 ※ 단, 계측장치 중 PT(Pressure Transmitter), TT(Temperature Transmitter), LT(Level Transmitter) 등 압력, 온도, 수위 등의 측정값 전달이 가능한 장치(Transmitter 등)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제외 2. 카메라를 통한 계측장치의 측정값은 무선방식을 통해 원거리에 위치한 근로자의 스마트폰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과거 측정기록 포함)하며 실시간 확인이 가능할 것 3. 투자완료확인(요청)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검토)보고서를 받아 기준가격 산정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 성	최소 성능기준
통합제어장치 (AI영상처리장치, 컴퓨터 또는 그 역할을 하는 장비 및 모니터, 그 밖에 장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구성(통합제어장치)은 각 장치 등이 종합하여 아래 최소성능기준을 충족 ○ 현장에 설치된 계측장치 종류에 따라 측정값을 확인할 수 있어야하며, 항시 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설치 ○ KCS(방폭인증)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폭구역과 관계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제외(설치도면 등 설명 관련 서류 제출) ○ 컴퓨터 등으로 무선연결을 통해 송수신의 장애가 없이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이지가 정상범위를 벗어날 경우(고장, 파손 등 포함), 화면을 통한 경고 알림기능 - 계측장치의 게이지 정상 작동범위를 설정가능 - 무선통신을 통해 스마트폰 등으로 알림(SMS 등) 기능 가능.
카메라	KCS(방폭인증)제품(관련 서류 동봉 및 사본 제출) IP 55 이상

10-5. 화학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화학물질 누출방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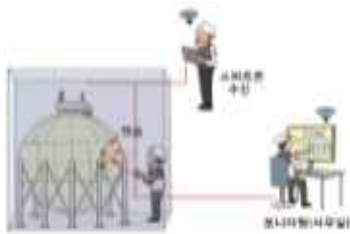
- (지원목적) 화재폭발 위험장소에 IoT, AI 기반의 “화학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여 화재, 폭발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검출대상물질(유해화학물질 등)과 일반 액체(빗물 등)을 선택적으로 감별할 수 있는 기술이 접목된 누액감지 센터 및 모니터링 시스템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화학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화학물질 누출방지형)	1. (신청 시)급성독성물질, 관리대상 유해물질(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유해화학물질 등 제조·취급·저장 사업장 중 경보설비를 설치해야하는 설비 보유 사업장 2. 투자완료확인(요청)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검토)보고서를 받아 기준가격 산정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 성	최소 성능기준
제어기 및 모듈	1. 누출 감지 시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경보장치를 설치 2. 물질 누출 감지 시 무선통신 연결방식을 통해 연결된 컴퓨터 또는 이동장치문자(SMS) 및 누출 경고 알림이 가능 3. KC(전자파 인증) 4. 전원 공급 차단 시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UPS) 등을 통해 최소 30분 이상 유지할 것 5. 물질이 센서(필름)에 감지될 경우, 대상 물질만 구별하여 감지 및 경보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물질 접촉 시에도 성능에 이상이 없을 것 6. 누출 여부와 관계없이 센서 주변 상태를 감지 및 모니터링
커넥터 및 센서	1. 외부환경 또는 사업장 환경에 따라 적정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내구성 보유 2. 방수방진등급 : IP65 이상 ※ 센서의 경우, 누출액이 직접 접촉하는 부위는 방수등급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10-6. 화학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방폭 정전기 측정기: 옵션)



- (지원목적) 화재폭발 위험장소에 IoT, AI 기반의 “화학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여 화재, 폭발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인화성가스·액체를 취급하는 장소에 방폭안전인증을 받은 정전기 측정기를 통하여 안전하게 점검하고, 이를 무선통신으로 스마트폰 등과 연결하여 작업관리자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비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스마트 방폭형 정전기 측정기 (옵션)	1. (신청 시) “화학사고예방 통합모니터링 시스템”품목으로 지원받은 사업장 중 방폭 정전기 측정기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 2. 무선통신 등으로 스마트 폰과 연결되어 작업자가 실시간으로 수치를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함. 3.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 성	최소 성능기준
정전기 측정기 (본체)	1. 폭발위험장소 내 설치·사용되는 방폭구조전기기구 등은 고용노동부고시 따른 안전인증품 (KCs, 내압방폭인증)일 것 2. 전파인증(KC) 제품 3. 정전기 측정범위 : -40kV~40kV 4. 무선통신 등으로 스마트 폰과 연결되어 작업자가 실시간으로 수치를 모니터링을 가능 할 것 - 무선통신이 가능한 거리는 최소 10m이상이어야 하며, 스마트 폰과 연결이 원활하고 수치 등 - 측정기 본체에 정전기 수치가 디스플레이 될 것. 5. 검교정을 받았다는 검교정서가 있어야 함.

※ 각 구성품(전기기구 및 부속품 등)을 폭발위험장소 내 설치 시 한국산업표준(KS) 등 기준에 따른 적합한 방폭전기기구 선정 및 사용(안전인증품(KCs)) 및 방폭구조)

11. 이륜차 운전자 착용형 충돌보호 에어백조끼



- (지원목적) 이륜차 운전자가 도로주행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이륜차 충돌보호용 에어백 조끼” 를 지원하여 교통사고에 따른 전도·충돌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이륜차 운전자가 충돌 등으로 자리에서 이탈하는 경우, 조끼와 이륜차에 연결된 고리가 풀리면서 에어백이 작동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이륜차 운전자 착용형 충돌보호 에어백조끼	1. (신청 시) 배달, 택배업, 음식업 등 관련 업종에 지원(표준산업분류: 49401~2, 561XX) ※ 최대 지원한도(수량)은 신청 시 상시근로자 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수에 한해 지원 2.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성	최소 성능기준
이륜차 운전자 착용형 충돌보호 에어백조끼	1. 국·내외 공인인증기관에서 안전성을 인증 받은 제품(CE 등) 2. 이륜차 운전자가 전도·충돌 등으로 운전석에서 이탈할 경우, 이륜차에 연결된 버클(고리)등이 풀리면서 에어백이 작동하는 구조일 것

12-1.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전기안전)



- (지원목적) 산업현장의 전기사용 시 정보통신,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전기로 인한 화재·누전 등 다양한 재해를 예방
 - (품목설명)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하여 전력사용에 대한 정보수집 및 모니터링을 통해 전력 이상* 발생 시 알림 및 조치하여 전기 관련 재해를 예방하는 장치
- * 전력 이상: 과부하, 누전, 이상주파수, 과전압, 전원꺼짐, 온도상승(화재) 등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1. (신청 시) 전 업종 지원 가능(설치도면 제출) 2. 투자완료확인(요청)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검토)보고서를 받아 기준가격 산정 ※ 단, 실거래 세금계산서(5건 이상) 제출 시 실거래금액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 가능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 성	최소 성능기준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1. 과부하, 누전, 과전압, 이상 주파수, 전원차단 등 이상전력 감 지해야 하며, 발생 시 알림* *문자발송, 스마트폰 어플알림, 내부 경보(알림) 등 - 작업장 소음에도 위험 경고 등을 경보음&진동을 통해 즉시 인지 할 것(경보음 off 불가) 2. 원격으로 전원(on/off) 제어, 과부하차단, 전력강제 통제권, 대기전력 차단, 부하 조절 (초과시 전원차단) 3. 분전함 내에 설치하거나 별도의 케이스를 설치할 것 4. 무선, 유선 중 1가지 이상으로 스마트폰 또는 전용PC(모니터)에 연결될 것 5. KC(전파인증)제품을 받은 제품일 것

12-2.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아크제거장치)



- (지원목적) 산업현장의 전기작업 시 정보통신, 신기술을 활용한 기술로 아크 폭발 사고 등 사망사고를 예방
- (품목설명) 센서 등을 통해 수배전반에 발생하는 전기아크를 감지하여 순간적으로 제거하는 스마트 안전장치

대상설비명	보조금 지급기준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아크제거장치)	1. (신청 시) 고압의 수배전반을 보유(소유)한 사업장 - 1식 기준,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모니터, CPU관련장치, 유·무선장치, 기타 자재 등 지원 가능 2. 투자완료확인(요청)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검토)보고서를 제출 받아 기준가격 산정
구성	최소성능기준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아크제거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배전반에서 아크발생시 4ms내(투입동작시간)작동하여 아크를 제거하고, 해당 기능이 10회 이상 가능할 것 - KOLAS인증기관에서 KOEMA0931규격(아크제거기)에 따른 시험성적서(적정)를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투입동작시간(4ms), 무부하개폐시험 등에서 아크제거 횟수가 10회* 이상일 것.(시험성적서 제출) * 동작횟수(관련기기)에 대해 3년간 무상A/S 가능할 것(그외 기기는 공고 기준을 따름) - 제3자 모니터링 기능 : 디스플레이는 일반컴퓨터 모니터 크기이며, 실시간 아크 발생의 현황과 아크발생 등 위험상황 발생시 시각 및 소리로 알릴 수 있어야 함. ※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모니터, CPU관련장치, 유·무선장치, 기타 자재 등 지원 가능

14. 근력보조슈트



- (지원목적)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장기간 반복 작업을 실시하는 작업자에 대해 근력운동을 보조할 수 있는 “**근력보조슈트**”를 지원하여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기여
- (품목설명) 고정자세, 중량물 취급 등 신체 부담이 되는 작업을 인공골격·근육, 센서 및 동력을 통해 근골격계질환 발생을 줄여 주는 슈트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근력보조슈트	1. (신청 시) 근골격계 부담작업(2호 ~11호)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해 지원 ※ 단, 지원사업장 내 사용으로 한함(산안법 상 특수고용형태 택배원은 지원가능) - 신청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기본조사표」 제출받을 것(첨부4) ※ 참조 : 공단 홈페이지-사업소개(산업보건)-근골격계질환예방 ※ 최대 지원한도(수량)는 신청 시 상시근로자 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수에 한해 지원 2. 가격결정근거자료 제출 ※ 수입면장(수입품) 또는 실거래 세금계산서(국내, 5건 이상, 최저가격)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분	최소 성능기준
근력보조슈트	1. CE 중 CoC*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국내외 공인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제품 * Certificate of Conformity : 적합성 인증 ※ 제품자체(전체) 안전성 및 품질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함 2. 외골격, 철제프레임, 동력 및 센서, 인공(합성)근육 등으로 구성된 제품 (밴드, 섬유, 패드만으로 이루어진 슈트는 지원불가)

15. 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 보조장치



자동감지

- (지원목적)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자에게 적은 근력과 일정한 근력으로 보조할 수 있는 “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 보조장치”를 지원하여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기여
- (품목설명) 사람이 취급하기에 무겁고 다양한 중량물을 일정한 힘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장치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 보조장치	1. (신청시) 근골격계 부담작업(6호~10호)에 해당되는 단위 작업장소에 한해 지원 - 신청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기본조사표」 제출받을 것(첨부4) ※ 참조 : 공단 홈페이지-사업소개(산업보건)-근골격계질환예방 2. 투자완료확인(요청)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가계산(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기준가격 산정 ※ 단, 실거래 세금계산서(5건 이상) 제출 시 실거래금액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 가능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분	최소 성능기준
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 보조장치	1. 중량물 취급시, 센서 및 공압기술로 무게를 자동감지 및 제어하여, 작업자가 일정한 근력(부하)을 사용해야함 ※ 한국인정기구(KOLAS) 또는 국제인정협력체(ILAC, APLAC)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시험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를 제출 2. 다관절 구조로 x,y,z 축, 전 방향(유선형 움직임포함)으로 자유롭게 움직임 가능 3. 기계 동력만으로 중량물을 취급(예 : 리프트, 호이스트 등)하는 것이 아니어야함 4. 취급중량은 최대100kg 이하이며,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함 ※ 예 : 앵커볼트로 고정 등 5. 취급중량물 무게(중량)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되고, 무게(중량)가 취급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알람 등이 울려 사용자가 알 수 있어야 하며 정지하여야 함 (알람은 off또는 소리를 줄일 수 없어야 함)

16-1. 스마트 안전보건 개인보호구(스마트 귀마개)



- (지원목적) 소음 발생 작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스마트 귀마개” 를 지원하여 원활한 의사소통과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기 위함.
- (품목설명) 전파 및 그 밖에 스마트 기술 등을 통해 소음을 제거하는 귀마개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스마트 안전보건 개인보호구 (스마트 귀마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 시) 소음작업(85dB이상)에서 단위 작업장소 기준으로 직전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 따른 소음 노출 근로자의 200%(2배)에 한해 지원 2. 귀마개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5호[보호구 안전인증고시]에 따른 안전인증품(KCs)일 것 3.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분	최소 성능기준
스마트 귀마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인증품(KCs)일 것 2.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유해소음 차단이 가능할 것 3. 1회 충전시 16시간 이상 사용가능

16-2. 스마트 안전보건 개인보호구(방진마스크)



- (지원목적) 분진 발생 작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방진마스크를 지원하여 원활한 호흡 및 효율적인 필터 사용과 직업병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함.
- (품목설명) 호흡과 연동된 센서를 통하여 공급 유량을 자동으로 조절이 가능한 전동식 방진마스크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스마트 안전보건 개인보호구 (방진마스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 시) 신청일 기준 직전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 따른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하는 대상 근로자의 200%(2배)에 한해 지원 2. 전동식 방진마스크는 안전인증품(KCs) 일 것 3. 여과재(방진필터)는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 따라 특급/1급/2급을 사용할 것 4.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 성	최소 성능기준
방진마스크 (본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인증품(KCs)일 것 2.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 따라 적절한 방진마스크 등급 및 여과재(방진필터)를 선정할 것
전동팬 (내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스크 내부 압력 감지 및 적절한 공기의 양을 자동 조절하여 공급할 수 있을 것 2. 전원(배터리) 상태(잔량 확인 및 배터리 용량 부족 시 경고 기능)를 확인할 수 있을 것 3. 배터리는 1회 완충 시, 최대 8시간 이상 사용 가능

17. 스마트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장비



- **(지원목적)** 무선통신기술 및 그 밖의 신기술을 적용한 산소 및 가스농도 측정기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원하여 관리자 및 그 외 근로자들에게 알려, 밀폐공간 질식재해를 예방 또는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기여
- **(품목설명)** 무선통신(IoT) 또는 그 밖의 신기술을 통해 공간 제약 없이 실시간으로 밀폐 작업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질식·중독재해를 예방하는 장비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스마트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장비	1. (신청 시) 밀폐공간 작업장소*를 보유 및 내부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장 - 밀폐공간 작업장소 당 1개에 한해 지원(건설현장 및 건설업본사 지원제외)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618조, 별표 18에 포함되는 장소 -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 [별표1] 위험물질의 종류 제5항 인화성가스, 제6항 인화성액체 취급·저장 설비 보유 사업장에 지원불가 ※ 화학사고예방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지원 2. 투자완료확인(요청)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기준가격 산정 ※ 실거래 세금계산서 제출에 따른 기준가격 결정(5건 이상, 최저가격) 가능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 성	최소 성능기준
디바이스 (측정기, 옵션 등)	1. 산소, CO, H2S 등의 농도 및 질식·중독 위험범위를 실시간으로 측정 가능할 것(추가 센서 옵션 가능) 2. 센서 및 배터리 등 교체 또는 이상 등을 전원 작동시 진단하는 자가 기능이 있어야하며, 사용자가 바로 인지할 수 있을 것 3. 스마트폰 등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과 비상상황 발생 시 스마트폰과 디바이스에서 경보음이 울릴 것(디바이스는 경보음 off 불가) 4. 작업장 소음에서도 위험 경고 등을 청각적으로 바로 인지할 수 있을 것 5. 스마트 폰 등과 무선방식으로 연결되고, 방해물로 인한 차폐상황에서도 최소 20m 이상 연결이 끊기지 않고 작동할 것 6. 배터리는 충전식인 경우에는 1회 충전시 16시간 이상 작동할 것 7. KC(전파인증)제품, 디바이스의 설치된 가스센서는 검교정 및 시험성적서를 받은 제품일 것(관련 서류 동봉 및 사본 제출) 8. 방수방진등급 : IP55이상 9. 현황 모니터링, 중계기(증폭기) 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속품(옵션) 등은 지원가능

18. 유해물질 통합안전관리시스템



○ (지원목적)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ICT) 또는 그 밖의 신기술을 통해 유해물질을 통합관리하여 유해물질 노출 및 폭발 사고 등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함.

○ (품목설명)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ICT) 또는 그 밖의 신기술을 통해 유해물질의 사용량, 정보, 노출량 등 사용정보와 환기장치의 모니터링·통제 등 통합관리가 가능한 시스템

대상설비명	보조금 지급기준
유해물질 통합안전 관리시스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 시) 작업환경측정을 시행 중인 사업장 중 화학공정 또는 실험·연구실을 보유한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일 기준 직전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상 측정대상 공정에 화학공정 또는 연구·실험실 확인 2. (신청 시) 컨트롤 디바이스와 최소1개 이상의 설치 디바이스로 신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옵션(측정센서 디바이스)는 설치 디바이스와 같이 신청가능(단독 지원불가) 3. 국소배기장치의 적정 제어풍속 및 구조 등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완료 시, 제어풍속 측정하여 확인 4. 컨트롤 디바이스를 통해 각 별도 디바이스와 연계(기능·환경의 상태 확인 및 제어 등)가 가능해야함. 5. 전파관련 제품은 KC전파인증을 받아야하며, 유해물질 센서 관련 제품인 경우, 각 센서는 1년이내의 시험성적서 및 검교정을 받은 제품일 것. 6. 투자완료확인(요청)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검토) 보고서를 제출받아 기준가격 산정 7. 사후기술지도 대상 품목

■ 컨트롤 디바이스(필수)

구 성	최소 성능기준
컨트롤 디바이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디스플레이(10인치 이상)와 인터페이스는 사업장 상태를 고려하여 사용자가 보는데 선명하고 불편이 없어야하며, 디바이스는 사업장 환경 등을 고려하여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는 보호정도(IP, 방폭 등)와 재질을 갖추어야함 2. 컨트롤 디바이스는 각 기기별로 전원상태, 연결상태, 위험 시 경고음, 고장 등 이상상태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현황 또는 정보 등을 볼 수 있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약장 : 필터 교체여부(필터식인 경우), 시약반출입, 시약현황, 문열림상태. 경고표시 등 - 유해물질 센서 : 센서 교체여부, 해당 장소에 발생하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의 노출정도와 해당 장소, 경고표시 등 - 전체 또는 국소배기(정화) : 필터 교체여부(필터식인 경우), 제어풍속, 해당 장소에 발생하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의 노출정도와 해당 장소, 경고표시 등 - 흡후드 : 필터 교체여부, 제어풍속, 해당 장소에 발생하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의 노출정도와 해당 장소, 경고표시 등 3. 컨트롤 디바이스는 각 기기별로 전원제어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제어가 가능해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약장 : 문잠금/열림 - 전체 또는 국소배기(정화)장치, 흡후드 : 제어풍속 4. 일반 컴퓨터(클라우드, 프로그램 등)로 상기된 "컨트롤 디바이스"의 성능 및 기능이 가능한 경우, 유해물질 및 위험·작업환경에 노출되지 않는 일반 사무실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대체가능

■ 설치 디바이스(1개 이상 필수)

구 성	최소 성능기준
공통적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스플레이와 인터페이스는 사업장 상태를 고려하여 사용자가 보는데 선명하고 불편이 없어야하며, 디바이스는 사업장 환경 및 노출물질 등을 고려하여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는 보호정도(IP, 방폭 등)와 재질을 갖추어야 함 발생하는 유해물질 등을 정화하여 외부로 배기할 수 있어야 하며, 작업장으로 재유입되지 말아야 함 (시약장은 별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기덕트는 유해물질의 특성에 따라 내부식성, 내마모성, 내구성 등을 보유한 재질 또는 구조이어야 하며, 분진·흙·미스트 등이 퇴적할 수 없거나 청소 등이 용이한 구조여야 함 국소배기장치, 흡후드의 경우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어풍속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유해인자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함 - 최대 풍량 작동 시 발생하는 소음은 80dB이하 이어야 함.
전체 또는 국소배기 (정화) 디바이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소배기(정화)장치가 우선 설치이나 작업 및 사업장 상태 등 고려하여 전체환기(정화)장치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 작업환경측정 기관의 의견*을 받아 제출 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환경측정 결과서의 개선의견 또는 별도의 확인의견서 등 사업장 필요 유해물질의 센서를 통해 해당 농도 등이 실시간 모니터링(숫자 또는 이미지·색상 등 표시 가능)이 가능하고, 위험시 경고 표시(경보음 포함)가 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물질 센서는 검교정 및 시험성적서를 받은 제품일 것(관련 서류 사본 제출)
시약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약 문은 내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부 투명 재질로 하되, 물리 및 화학적으로 견고한 내구성을 갖출 것. 디스플레이에 필터 교체여부(필터식인 경우), 시약반출입, 시약현황, 문열림상태, 경고표시 등을 확인 또는 표시할 수 있어야 함. 문잠금/열림 등 시건장치가 설치 또는 기능이 있어야 함. 시약장의 내부의 공기 중의 체류하는 유해인자 등을 정화하여 외부로 배기할 수 있어야 하며, 작업장으로 재유입되지 말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기덕트는 유해물질의 특성에 따라 내부식성, 내마모성, 내구성 등을 보유한 재질 또는 구조이어야 하며, 분진·흙·미스트 등이 퇴적할 수 없거나 청소 등이 용이한 구조여야 함.
흡후드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업면의 관찰이 용이하도록 좌우정면이 투명재질이어야 하며, 물리 및 화학적으로 견고한 내구성을 갖출 것.

■ 옵션 (단독지원 불가)

측정센서 디바이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디바이스는 사업장 환경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는 보호정도 (IP, 방폭 등)와 재질을 갖추어야함 기본 산소, CO 농도와 그 외 사업장 필요 유해물질 센서 등을 추가할 수 있으며, 각 유해가스의 농도 등이 실시간 모니터링(숫자 또는 이미지·색상 등 표시 가능)이 가능하고, 위험시 경고 표시(경보음 포함)가 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물질 센서는 1년 이내 검교정 및 시험성적서를 받은 제품일 것(관련 서류 사본 제출)
------------------	---

※ 우선선정 기준에 관계없이 최우선선정

- ① '23년도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대상 기업, ②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 ③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체결 기업
- ④ 특별재난지역(산불 등의 피해지역) 내 피해사업장

선정 항목	항목별 가중치	비고								
■ 공통적용 항목	최대 70점									
①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 근로자수 5인 미만 10점, 5~10인 미만 5점, 10~20인 미만 3점	최대 10점	접수일 기준 최근 확정 공식통계 상시근로자수 기준								
② 최근 3년간('21~'23년) 보조금 지급을 받지 않은 사업장	5점									
③ 사고사망만인율 상위 업종	최대 15점	'23년 공식통계 기준 중업종 단위배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사고사망만인율 2배수 이상</th> <th>사고사망만인율 1~2배수 이내</th> <th>사고사망만인율 0.5~1배수 이내</th> </tr> </thead> <tbody> <tr> <td>배점</td> <td>15점</td> <td>10점</td> <td>5점</td> </tr> </tbody> </table>	구분	사고사망만인율 2배수 이상	사고사망만인율 1~2배수 이내	사고사망만인율 0.5~1배수 이내	배점	15점	10점	5점		
구분	사고사망만인율 2배수 이상	사고사망만인율 1~2배수 이내	사고사망만인율 0.5~1배수 이내							
배점	15점	10점	5점							
④ 최근 3년간('21~'23년) 추락·끼임·부딪힘 사고 재해자 발생 사업장	최대 20점	'21~'23년 공식통계 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3년 발생</th> <th>2년 발생</th> <th>1년 발생</th> </tr> </thead> <tbody> <tr> <td>배점</td> <td>20점</td> <td>15점</td> <td>10점</td> </tr> </tbody> </table>	구분	3년 발생	2년 발생	1년 발생	배점	20점	15점	10점		
구분	3년 발생	2년 발생	1년 발생							
배점	20점	15점	10점							
⑤ A기반 고위험 예측사업장(위험도 기준)	최대 20점	※ 선정일 기준 전월 위험도 - 공단 빅데이터「고위험사업자 예측」결과 활용 ※ 위험률 정도에 따른 점수부여 - 저위험군(0.0~0.2미만) - 중위험군(0.2~0.8미만) - 고위험군(0.8~1.0)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고위험군</th> <th>중위험군</th> <th>고위험군</th> </tr> </thead> <tbody> <tr> <td>배점</td> <td>20점</td> <td>15점</td> <td>10점</td> </tr> </tbody> </table>	구분	고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	배점	20점	15점	10점		
구분	고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							
배점	20점	15점	10점							
■ 자율활동 우수항목	최대 30점									
⑥ KOSHA-MS 인증 사업장	15점	인정 유효기간 내 보조금신청 시 점수 부여								
⑦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10점	인정 유효기간 내 보조금신청 시 점수 부여								
⑧ 아래의 사업에 참여사업장 ①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지원 업체, 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사업장, ③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참여 사업장 - 세가지 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공단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위탁) 사업장에 점수 부여	5점	'23,'24년도 사업 참여사업장								
■ 가점 항목	(가점) 20점									
⑨ 기술원 및 유관기관(중기부 등) 혁신(추천)제품 ※ 인정범위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신기술(NET)인증 제품, 환경부 혁신제품,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그 외 국가 및 공인기관 인증 등	20점	관련 증빙(확인서, 인증서 사본 등 신청 시 제출)								
계	최대 100점									

※ 개별선정 점수가 동일할 경우 항목별 순번(②→③→④→⑤→⑥→⑦)의 고득점 사업장 순으로 우선선정
 ※ 공생협력 프로그램은 사업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⑧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지원 업체로 수정

스마트 안전장비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사업장명	00 가공 산업	평가일시	24. 3. 22.	작성자	김안전
작업공정 (작업내용)	위험요인 및 재해형태	현재안전조치	위험성 결정	개 선 대 책	
재로 입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게차운행 중 과적재에 따른 전도 재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업계획서 작성 주변 관리감독자 배치 감독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 전도예방장치를 지게차에 장착하여 상시 과적재와 전도여부를 운전자에게 알려 예방하도록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게차운행 중 보행 근로자와 충돌 재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업계획서 작성 주변 관리감독자 배치 감독 보행자와 지게차 운반로 구획 구분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 충돌예방장치를 지게차에 장착하여 충돌 위험을 운전자에게 사전에 알려 예방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자재(철판)이 적재불량으로 무너져 근로자 깔림 재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재대 및 고정장치설치하여 적재 적재 주변을 고려하여 구획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상태 유지 	
절 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 절단기 수리·점검 중 급작스러운 작동으로 근로자 절단 사고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OTO 실시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위험기계기구)를 설치를 통해 근로자를 자동 감지하여 정지하도록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 절단기 주변에 관계자 외 사람이 출입하여 끼임 등 사고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건표지(출입금지) 부착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지능기반(AI) 인체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관계자외 출입 및 기타 재해 등 예방 	
용 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리·보수·기타 확인을 위해 산업용로봇 근처로 가는 중 급작스러운 작동으로 충돌 위험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OTO 실시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위험기계기구)를 설치를 통해 근로자를 자동 감지하여 정지하도록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접시 발생하는 불티로 인해 화재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건표지 부착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지능기반(AI) 인체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관계자외 출입 및 기타 재해 등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용 로봇 충전부 노출 부분에 접촉하여 감전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전부에 절연덮개 설치 - 덮개 제거하여 작업시 작업계획서 관리감독자 배치 - 주회 충전부 노출여부 순회점검 안전보건표지 부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상태 유지 	
적 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장크레인으로 가공 철판을 옮기는 도중 근로자와 충돌 및 자재에 깔림 재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업계획서 작성 주변 관리감독자 배치 감독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지능(AI) 크레인충돌예방장치를 설치하여 충돌사고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공된 철판을 창고에 적재하는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게차운행 중 보행 근로자와 충돌 재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업계획서 작성 보행자와 지게차 운반로 구획 구분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 충돌예방장치를 지게차에 장착하여 충돌 위험을 운전자에게 사전에 알려 예방하

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투자계획)

1. 제공·설치 예정인 스마트 안전장비(가) 아래와 같이 (공단)최소 성능기준 이상임을 확인 및 서약합니다.

구분	(공단) 최소 성능기준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설치·제공 장비 사양	적정 여부
카메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류 : 열화상카메라 또는 일반카메라 -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 무선통신을 통해 AI영상처리장치와 상호 연결가능 - 접이식 사다리 구조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이동 및 설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카메라 1대 - 방수방수 등급 IP66 - LTE를 통해 AI영상처리장치와 카메라 연결 - 접이식 사다리 	☑
통합제어장치 (AI영상처리장치, 컴퓨터 또는 그 역할을 하는 장비 및 그 밖에 장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구성(통합제어장치)은 각 장치 등이 종합하여 아래 최소성능기준을 충족 - 모니터 등으로 실시간 상황을 화면으로 모니터링 가능 - 끼임부딪힘과 추가 옵션에 대해 신속히 인지하고 스스로 작동(경보 또는 조치 등) - 분진유입, 온도, 습도 등 작업장 환경으로부터 적정 성능을 유지하도록 케이스 제작, 사무실 설치 등 조치 조건 - AI알고리즘 사용 : YOLO 객체 탐지 수준의 알고리즘 이상 ※ 한국인정기구(KOLAS) 또는 국제인정협력체(ILAC, APLAC)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시험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에서 AI알고리즘 사용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를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블릿에 APP을 통해 실시간 영상 확인 - 작업자가 위험설비에 접근하는 것을 신속히 인지하여 경고 및 위험설비 정지 - (통합제어장치) 컴퓨터 1대, 모니터 1대, AI영상처리장치(YOLO 알고리즘), 이더넷 통신방식 적용 등 - 한국00협회(KOLAS 인정기관)에서 증명한 AI YOLO 알고리즘을 통한 딥러닝 적용 (인증서 참고) - 위험지역 작업장소 등 설치환경에 맞게 케이스 제작 설치 	☑
배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충전 시 48시간 이상 작동 - 별도의 충전기구를 통해 외부 충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충전 시 60시간 사용 - 어댑터 충전기를 통한 충전 	☑
경보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 위험, 경고를 가시적으로 확인가능, 부저(경보음)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수방진등급 : IP66 - 경고등: 광원 LED, 3단계 적용(녹색, 황색, 적색), 점등·점멸 및 황색·적색 시 부저 기능 	☑

2.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가 제공·설치한 스마트 안전장비(구성포함)의 “설치·제공 장비 성능” 이 “최소성능기준” 에 미달 또는 내용과 다르거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및 지급신청사업장 각각의 귀책에 따라 책임의 의무가 있으며,

3.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158조 및 용자금 지원사업 운영규정(고시), 그 밖에 공단 내규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위 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함.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명 : △△AI 사업주 : 김 안전 (서명)

지급신청사업장명 : 00 가공산업 사업주 : 이 보건 (서명)

사업장 전경 및 지원품목 설치대상 작업 증빙사진(자금신청)

사업장명	(주)00종합건설	작성일자	2023. 4 . 3.
<p>□ 설치 및 구매 품목명 : 인공지능기반 인체감지시스템(이동식)</p> <p>○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명 : □□시스템(주)</p> <p>○ 완료 증빙사진</p>			
사진1		사진2	
사진 제목1		사진 제목2	
사진3		사진4	
사진 제목3		사진 제목4	
사진5		사진6	
사진 제목5		사진 제목6	

※ 필요에 따라 사진(칸) 등을 추가하여 작성

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투자완료)

1. 제공·설치 예정인 스마트 안전장비(가) 아래와 같이 (공단)최소 성능기준 이상임을 확인 및 서약합니다.

품목명	인공지능기반 인체감지시스템(이동식)		
구분	(공단) 최소 성능기준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설치·제공 장비 사양	적정 여부
카메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류 : 열화상카메라 또는 일반카메라 -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 무선통신을 통해 AI영상처리장치와 상호 연결가능 - 접이식 사다리 구조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이동 및 설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카메라 1대 - 방수방수 등급 IP66 - LTE를 통해 AI영상처리장치와 카메라 연결 - 접이식 사다리 	☑
통합제어장치 (AI영상처리장치, 컴퓨터 또는 그 역할을 하는 장비 및 그 밖에 장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구성(통합제어장치)은 각 장치 등이 종합하여 아래 최소성능기준을 충족 · 모니터 등으로 실시간 상황을 화면으로 모니터링 가능 · 끼임부딪힘과 추가 옵션에 대해 신속히 인지하고 스스로 작동(경보 또는 조치 등) · 분진유입, 온도, 습도 등 작업장 환경으로부터 적정 성능을 유지하도록 케이스 제작, 사무실 설치 등 조치 조건 · AI알고리즘 사용 : YOLO 객체 탐지 수준의 알고리즘 이상 ※ 한국인정기구(KOLAS) 또는 국제인정협력체(ILAC, APLAC)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시험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에서 AI알고리즘 사용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를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블릿에 APP을 통해 실시간 영상 확인 - 작업자가 위험설비에 접근하는 것을 신속히 인지하여 경고 및 위험설비 정지 · (통합제어장치) 컴퓨터 1대, 모니터 1대, AI영상처리장치(YOLO 알고리즘), 이더넷 통신방식 적용 등 · 한국00협회(KOLAS 인정기관)에서 증명한 AI YOLO 알고리즘을 통한 딥러닝 적용 (인증서 참고) - 위험지역 작업장소 등 설치환경에 맞게 케이스 제작 설치 	☑
배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충전 시 48시간 이상 작동 - 별도의 충전기구를 통해 외부 충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충전 시 60시간 사용 - 어댑터 충전기를 통한 충전 	☑
경보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 위험, 경고를 가시적으로 확인가능, 부저(경보음)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수방진등급 : IP66 - 경고등: 광원 LED, 3단계 적용(녹색, 황색, 적색), 점등점멸 및 황색적색 시 부저 기능 	☑

2.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가 제공·설치한 스마트 안전장비(구성포함)의 “설치·제공 장비 성능” 이 “최소성능기준” 에 미달 또는 내용과 다르거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및 지급신청사업장 각각의 귀책에 따라 책임의 의무가 있으며,

3.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158조 및 융자금 지원사업 운영규정(고시), 그 밖에 공단 내규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위 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함.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명 : △△AI 사업주 : 김 안전 (서명)

지급신청사업장명 : 00 종합건설 사업주 : 이 보건 (서명)

인공지능(AI)관련 카메라 설치에 대한 서약서

1. 지급대상사업장은 해당 스마트 안전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아래에 법적 사항을 준수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급대상사업장에 책임이 있음을 확인 및 서약합니다.

◆ (공 통) 근로자 대표*가 해당 스마트 안전장비()의 설치를 동의하였으며, 설치 주변 잘 보이는 장소에 "시설안전(산업안전) 및 화재예방" 목적으로 해당 스마트 안전장비()를 설치하였음을 안내하는 표지 등을 부착하여 공지하였음.

* 근로자대표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 (근로자 30인 이상)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구성하고, 제20조 1항 14호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에 따라 해당 스마트 안전장비()의 설치를 협의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였음

위 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함.

지급대상사업장명 :

사업주 :

(서명)

근로자대표 :

(서명)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 해당사항에 √ 하시고,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 조사구분	<input type="checkbox"/> 정기조사	수시조사 <input type="checkbox"/> 근골격계질환자 발생시 <input type="checkbox"/> 새로운 작업.설비 도입시 <input type="checkbox"/>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 변경시
● 조사일시		● 조사자
● 부서명		
● 작업공정명		
● 작업명		

가. 작업장 상황 조사

● 작업설비	<input type="checkbox"/> 변화 없음	<input type="checkbox"/> 변화 있음(언제부터)
● 작업량	<input type="checkbox"/> 변화 없음	<input type="checkbox"/> 줄음(언제부터) <input type="checkbox"/> 늘어남(언제부터) <input type="checkbox"/> 기타()
● 작업속도	<input type="checkbox"/> 변화 없음	<input type="checkbox"/> 줄음(언제부터) <input type="checkbox"/> 늘어남(언제부터) <input type="checkbox"/> 기타()
● 업무변화	<input type="checkbox"/> 변화 없음	<input type="checkbox"/> 줄음(언제부터) <input type="checkbox"/> 늘어남(언제부터) <input type="checkbox"/> 기타()

나. 작업조건 조사

1단계 : 작업별 과제 내용 조사 (유해요인 조사자)

직종명(Job Title) :

작업내용(Tasks) :

2단계 : 각 작업별 작업부하 및 작업빈도 (근로자 면담)

작업 부하(A)	점수	작업 빈도(B)	점수
매우 쉬움	1	아주 가끔(2개월마다 1~2회)	1
쉬움	2	가끔(하루 또는 주2~3일)	2
약간 힘들	3	자주(1일 4시간)	3
힘들	4	계속(1일 4시간 이상)	4
매우 힘들	5	초과근무 시간(1일 8시간 이상)	5

작업내용	작업 부하(A)	작업 빈도(B)	총점수(A×B)

3 단계 : 유해요인 및 원인 평가서

작 증 명																																												
<p><유해요인 설명></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height: 250px;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padding: 20px;"> <작업1 사진 또는 그림 첨부> </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padding: 20px;"> <작업2 사진 또는 그림첨부> </td> </tr> </table>			<작업1 사진 또는 그림 첨부>	<작업2 사진 또는 그림첨부>																																								
<작업1 사진 또는 그림 첨부>	<작업2 사진 또는 그림첨부>																																											
<p>작업별로 관찰된 유해요인 원인분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h style="width: 35%;">유해요인</th> <th style="width: 45%;">유해요인에 대한 원인</th> <th style="width: 20%;">총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 <작업내용1> _____ </td> <td></td> <td></td> </tr> <tr><td> </td><td></td><td></td></tr> <tr><td> </td><td></td><td></td></tr> <tr><td> </td><td></td><td></td></tr> <tr><td> </td><td></td><td></td></tr> <tr><td> </td><td></td><td></td></tr> <tr><td> </td><td></td><td></td></tr> <tr> <td style="padding: 5px;"> <작업내용2> _____ </td> <td></td> <td></td> </tr> <tr><td> </td><td></td><td></td></tr> <tr><td> </td><td></td><td></td></tr> <tr><td> </td><td></td><td></td></tr> <tr><td> </td><td></td><td></td></tr> <tr><td> </td><td></td><td></td></tr> </tbody> </table>			유해요인	유해요인에 대한 원인	총점수	<작업내용1> _____																					<작업내용2> _____																	
유해요인	유해요인에 대한 원인	총점수																																										
<작업내용1> _____																																												
<작업내용2> _____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업주 확인서

▶ 본 확인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지급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주가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로부터 사업주 부담금 및 부가세 일부(또는 전부)를 대납하게 하거나 되돌려 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추후에도 하지 않겠음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만약 부정수급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 통보, 보조금 환수(제재부가금 포함), 사업참여 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것을 사업주가 직접 서약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클린사업 보조금을 지급 받음에 있어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로부터 사업주 부담금 및 부가가치세 일부(또는 전부)를 현금 또는 계좌 송금 등의 방법으로 돌려받거나 대납하게 하는 부정수급 행위를 하지 않겠음을 서약하며,

만약 부정수급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 통보, 보조금 환수(제재부가금 포함), 사업참여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음을 확인합니다.

※ 클린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또는 보조금을 지급 받은 사업주)는 투자금액 중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주 부담금과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직접 납부하여야함. 만약 이를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등을 통해 되돌려 받거나 대납하게 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자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업장명 :

사업주 성명 :

(서명)

스마트 안전장비 시설개선 완료 증빙사진(투자완료)

사업장명	(주)△△산업	작성일자	2023. 4 . 3.
<p>□ 설치 및 구매 품목명 : 인공지능기반 인체감지시스템</p> <p>○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명 : □□시스템(주)</p> <p>○ 완료 증빙사진</p>			
사진1		사진2	
사진 제목1		사진 제목2	
사진3		사진4	
사진 제목3		사진 제목4	
사진5		사진6	
사진 제목5		사진 제목6	

※ 필요에 따라 사진(칸) 등을 추가하여 작성

<지급보증보험 증권 설명>

- ▶ 계약기간 :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단,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 + 4년으로 적용
 ※ (예시)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24.9.30.(지급보증기간 산정: 4년)
 보험기간: '24.9.30. ~ '28.9.29.
- ▶ 피보험자 : 안전보건공단(사업자등록번호 122-82-04898), 보험계약자 : 지급대상사업장
- ▶ 발급기관 : SGI서울보증보험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계약이 가능한 보증보험사
 ※ 문의처: SGI서울보증보험 울산지점(052-274-0021) 또는 관할 지역 지점

< 작성 예시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인터넷 발급용)

증권번호 제		호		
기본사항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122-82-04898 안전보건공단	
보험가입금액		₩	보험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시납 <input type="checkbox"/> 분납
보험기간	2024년 9월 30일부터 2028년 9월 29일까지			
보증하는 사항				
보증내용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 반환지급보증			
특별약관	1. 보험금지급특별약관 2. 신용카드이용보험료납입특별약관 본 증권에 첨부되어 있는 보통약관 및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기사항				
주계약내용	[주계약내용] 주계약명 계약기간 계약체결일자 계약금액	클린사업장 보조금 지원사업 2024년 9월 30일부터 2028년 9월 29일까지		

<하자보증보험 증권 설명>

- ▶ 계약기간 :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단,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 + 3년 2개월으로 적용
 - ※ 예시) ① 투자완료확인 요청일이 '24.6.30.이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이 '24.6.15. 경우 '24.6.15. + 3년 2개월 => '24.6.15. ~ '27.8.14.
 - ②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 이전 날짜로도 발행 가능 '24.6.1. 발행 시 '24.6.1. + 3년 2개월 가산하여 => '24.6.1. ~ '27.7.31.
- ▶ 피보험자 : 지급대상사업장, 보험계약자 :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 ※ 주계약금액 보증금율 : 계약금액(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30% 이상
- ▶ 필요서류 : 지급대상사업장과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간 계약 당시 계약서 (견적서 및 결정통보서 같음가능)
- ▶ 발급기관: SGI서울보증보험 또는 하자보증보험증권 계약이 가능한 보증보험사
 - ※ 하자보증보험 계약은 건설공사 및 납품계약 등을 모두 가능하여야 함
 - ※ 문의처: SGI서울보증보험 울산지점(052-274-0021) 또는 관할 지역 지점

<작성 예시 >

하자보증보험증권 (인터넷 발급용)			
증권번호	계	호	
기본사항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시납 <input type="checkbox"/> 분납
보험기간	2024년 6월 15일 ~ 2027년 8월 14일		
보증하는 사항			
보증내용	하자보증금		
특별약관	1. 보험금지급특별약관 2. 신용카드이용보험료납입특별약관 본 증권에 첨부되어 있는 보통약관 및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기사항			
주계약내용	[주계약내용] 주계약명 담보기간 계약체결일자 계약금액 보증금율		
	호치원 산업안전보건센터 교육훈련 역량강화 사업 실습·체험 교육시설 및 장비 등 제작·운송·현장 설치 2024년 6월 15일 ~ 2027년 8월 14일 30%		

별첨

일선기관별 관할지역 구분

일선기관명	관할지역	연락처
서울광역본부	서울특별시(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02-6711-2898
강원지역본부	강원도(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횡성군), 경기도(가평군)	033-815-1090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02-6924-8739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02-2086-8026
강원동부지사	강원도(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양양군, 고성군,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033-820-2572
부산광역본부	부산광역시	051-520-0681
울산지역본부	울산광역시	052-226-0526
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창원시,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하동군, 남해군, 통영시, 고성군, 거제시)	055-269-0546
경남동부지사	경상남도(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055-371-7553
광주광역본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062-949-8764
전북지역본부	전라북도(전주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063-240-8535
전남지역본부	전라남도(목포시, 신안군, 영암군, 무안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장흥군)	061-288-8735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064-797-7516
전북서부지사	전라북도(익산시,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063-460-3625
전남동부지사	전라남도(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061-689-4951
대구광역본부	대구광역시(북구, 중구, 동구, 수성구) 경상북도(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군위군)	053-609-0563
대구서부지사	대구광역시(남구, 달서구, 서구, 달성군,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053-650-6834
경북지역본부	경상북도(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구미국가 산업단지, 영주시, 봉화군, 상주시, 문경시, 안동시, 의성군, 예천군, 영양군, 청송군)	054-478-8025
경북동부지사	경상북도(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054-271-2046
인천광역본부	인천광역시	032-5100-523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031-259-7113
경기북부지사	경기도(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도(철원군)	031-828-1944
고양파주지사	경기도(고양시, 파주시)	031-540-3845
경기중부지사	경기도(부천시, 김포시)	032-680-6538
경기서부지사	경기도(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시흥시)	031-481-7514
경기동부지사	경기도(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031-785-3342
대전세종광역본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보령시, 금산군, 홍성군, 서천군, 부여군, 청양군)	042-620-5653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보은군, 증평군, 옥천군, 영동군)	043-230-7125
충북북부지사	충청북도(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043-849-1044
충남지역본부	충청남도(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예산군, 태안군)	041-570-3439